



보도자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과 장 김정균 주무관 곽혁용	042-481-5258 042-481-5107
	2015년 6월 8일(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7일(일)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름길

- '15년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시행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을 '15. 6. 8(월) 부터 6. 22(월)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 특허, 상표, 디자인을 활용하여 생산된 중소기업 제품 중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추천하여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격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권리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신청 기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1개 기업에 1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포함된 제품으로 양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용·통상 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이외에도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 일부면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5년간 총 467개의 우수발명품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추천하여 136건의 납품을 지원하였다.

* 추천 건수(건) : ('08)71 → ('09)114 → ('10)112 → ('11)60 → ('12)32 → ('13)78

* 납품 건수(건) : ('08)20 → ('09)16 → ('10)10 → ('11)22 → ('12)14 → ('13)54

또한, '12년 우선구매추천 중소기업에 대한 분석결과 선정 이후인 '13년 영업이익이 평균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기간 중소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11.1%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약 2배의 경영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 '12년 우선구매추천 中企 평균 영업이익(백만원) : ('12)279.5 → ('13)348.8[↑24.8%]

** 中企 전체 영업이익(백만원) : ('12) 28,694,169 → ('13) 31,882,818[↑11.1%]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올해의 경우 연중 4회에 걸친 접수·심사를 통해 추천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조달청의 공공기관 구매계획을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 (접수일정) 1차 : '15.6.8(월)~6.22(월), 2차 : '15.7.24(금)~8.6(목), 3차 : '15.9.7(월)~9.21(월), 4차 : '15.10.29(목)~11.11(수)
- (개선내용) 조달청의 공공기관 구매계획을 활용하여 추천제품과 유사품목에 대한 구매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우선 구매추천하여 사업효율성 향상

사업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를 통한 온라인 및 우편, 직접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사업공고 → 사업화지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http://www.kipa.org/kipabiz/kb_050601.jsp)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내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담당자 앞(우편번호 : 135-980)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6)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우수한 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

*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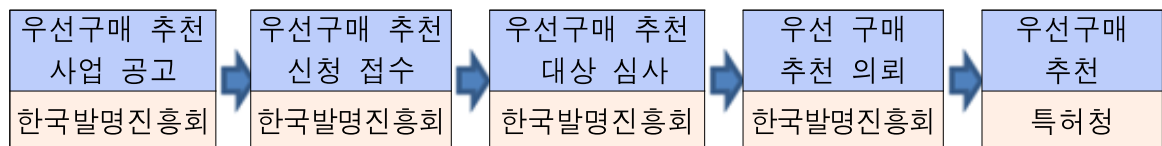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발명품의 우수성 등을 특허청이 심의하여 공공기관 등에게 동 우수 발명품을 우선구매토록 추천

<주요 사업연혁>

- 한국발명진흥회 자체 예산으로 우선구매추천사업 시행('95.)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10.7)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우수특허제품 홍보코너 개설('10.2)
- 중소기업 우수발명품 납품기회 확대를 위한 추천 횟수 증대('13년, '14년)
- 우선구매 추천횟수 : ('12년) 연2회 → ('13년) 연3회 → ('14년) 연4회

□ 추진체계



□ 신청자격

- 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등록일 기준 5년 이내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권리를 보유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 ② 우선구매 추천을 신청하는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하며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③ 당해연도에는 1사 1제품만 신청 할 수 있음(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 신청 제한사항

○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 ①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권리
- ②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③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④ 신청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 해당 권리가 무효, 취소 또는 소멸되었거나,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⑥ 신청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재고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상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⑧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상품인 경우
- ⑨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의 경우
- ⑩ 기타 진흥회 회장이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 서류 보완 등

- ① 신청 시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음
 -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도 보완내용의 제출이 없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취소됨
- ② 상기 ①항의 보완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기업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보완사항이 많아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기 어려울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신청 접수된 일체의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외부공개 제한